

특 별 시 방 서

I. 총 칙

본 장은 대게 보호초 수중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

1. 본 시방서와 일반시방서가 상충되는 내용은 동 시방서에 규정된 것을 우선한다.
2. 본 설치공사에 관련된 발주자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서 간주한다.
3. 시공자는 전면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.
4. 시공자는 설치공사의 진행방법, 작업순서,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 등의 상세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설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5. 본 설치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이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시공자가 감수하여야 한다.

II. 보호초 설치

1. 시공

가. 운반

- 1) 시공자는 보호초의 선적 및 운반방법, 운반경로 등을 설치계획서에 명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보호초의 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사업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나. 설치 준비 및 설치

- 1) 보호초 설치 전에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전 지형·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보호초를 설치할 수 없다.
- 2) 보호초 설치 전에 설치구역 및 위치를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표지기(標識旗)는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세심하게 관찰하고,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.
- 3) 설치구역 표시는 설치중심선(기준선), 비탈머리선, 비탈끝선을 각각 표시하고, 설치된 표지는 이동, 파손, 유실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- 4) 보호초 운반선은 설치구역 및 위치를 확인하고 조류, 파랑, 풍향, 운반선의 이동능력, 다른 항행선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5) 설치하기 전에 해저면 약 10m 지점에 정지한 후 보호초가 조류흐름에 밀리지 않고 정위치에 안착되도록 한다.
- 6) 설치하는 육상에서 플로터를 이용하여 사전 보호초 설치좌표를 입력하고, 입력된 좌표에 보호초를 오차범위 $\pm 10m$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검사

- 1) 설치장소에 입회한 검사관으로부터 플로터에 마킹된 보호초 설치좌표를 통해 보호초 설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.
- 2) 검사관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라. 민원 및 안전관리

- 1) 시공자는 주변의 민원이 없게 시공하여야 하고,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민원에 제기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

한다.

- 2) 시공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사업 도중 발생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.

마. 기타사항

- 1) 본 공사는 계약서, 설계내역서,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.
- 2)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.
- 3)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%이다.